

5-1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설 - 종전투자세액공제 관련제도 전면개편)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⁵⁷)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구 분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⁵⁸)

③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⁵⁹)

④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최초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⁶⁰)

▶ 지원 내용

-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율

	일반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시설	국가전력기술사업화시설
중소기업	10%	12%	16%
중견기업	3%	5%	8%
일반기업	1%	3%	6%

- 추가공제 :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left(\begin{array}{c} \text{해당 과세연도} \\ \text{투자금액} \end{array} - \begin{array}{c} \text{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 \text{연 평균 투자금액} \end{array} \right) \times 3\% \quad (\text{국가전력기술사업화시설4\%})$$

단,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57) 단,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의 2

58)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한 자산

59)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의한 자산

6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 되는 경우 :
 투자되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투자액에 대해 공제 적용
 (중전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 제12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제6호 가목 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신 설		중 전
통합투자세액공제	2021.12.31.까지 투자 원료분 선택적용 가능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5장
중소기업 투자유인책 지원

▶ **감면 세액 추정**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지원대상 건축물등과 구축물은 5년,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은 투자완료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⁶¹⁾, 이외 사업용자산은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과 함께 다음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정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5 (연 9.125%)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 3

61) 사후관리 기간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본다.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주식회사 절세의 나대표 사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출판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당시 구입했던 인쇄기가 고장이 잦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늘어나는 디지털 출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신식 기계설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직원들의 요구에 골머리를 앓던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고 기계구입 시 절세 방안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였다.



세무사 답변

출판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사업용 인쇄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1년 투자 완료분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선택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기계장치 투자액(사업용 자산 해당)	: 100,000,000원
디지털 신기계 구입비	: 80,000,000원
중고 인쇄기계 구입비	: 20,000,000원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	: 50,000,000원

기계장치(중고자산 투자 제외) 투자액의 10% + 추가공제

$$[80,000,000원 \times 10\%] + [(80,000,000원 - 50,000,000) \times 3\%] = 8,900,000원$$

<2021년인 경우>

MAX (①, ②) = 8,900,000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선택 적용함)⁶²⁾

-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계장치(중고자산 투자 제외) 투자액의 10% + 추가공제
 $[80,000,000원 \times 10\%] + [(80,000,000원 - 50,000,000) \times 3\%] = 8,900,000원$
- ②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액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중고자산 투자 제외) 투자액의 3%
 $80,000,000원 \times 3\% = 2,400,000원$

※ 2020년과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가능 (단, 투자자산별로 현행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할 수는 없음)

6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7759호) 제36조 【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